

4. 대구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20년 11월 19일
- 발 의 자 : 김재우 의원, 김지만 의원, 윤기배 의원, 이만규 의원,  
이시복 의원, 이태손 의원, 장상수 의원, 전경원 의원,
- 회부일자 : 2020년 11월 20일
- 상정일자 : 제2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2020년 12월 16일) 원안 가결

##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재우 의원)

### □ 제안이유

- 본 개정조례안은 재향군인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재향군인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 예산의 지원)

###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김창업)

#### □ 주요 검토사항

- 안 제5조는 재향군인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음.

#### □ 검토결과

- 대구시 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근거한 보훈 단체로 조국의 독립과 자유수호의 선봉으로 국토방위와 사회 공익에 공헌하기 위해 1983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영호남 교류협력,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시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재향군인회 사업비 보조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명	예산액
2018	영호남교류협력	6,000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10,000
2019	영호남 교류협력	6,000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10,000
	재향군인의날 호국단체한마음대회	10,000
2020	영호남 교류협력	15,000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10,000
	재향군인의날 호국단체한마음대회	10,000

- 타 시도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 경기, 전북 등 3개 광역 시·도에서 재향군인회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였고, 12개 시·도에서는 조례 개정없이 상위법에 근거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상황임.

〈타 시도 조례 현황〉

※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 : 광역 3곳 / 기초 4곳 - 인천, 경기, 전북 / 대구 중구, 동구, 서구, 수성구 ※ 조례 규정없이 상위법에 근거하여 운영비 지원 - 12개 시·도 / 서울·대구 미지원
---

- 「지방재정법」 상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운영비 지원의 근거가 있는 만큼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운영비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한 만큼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 사업비 관리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시스템 구축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질의없음.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